

의안번호	제661호
의결 연월일	2017년 월 일 (제358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7년 8월 21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661
----------	-----

제출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각3억원의 전입금 등 수입이 발생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금 지출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군 등의 용자금 조기상환 수입증가에 따라 예치금 증액과 도 용자 지출액을 조정하며, 식품진흥기금은 16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 수입이 증가하여 사업비와 금융기관 예치금을 증액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당초		변경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청소년육성기금	1,179	12	11	312	11	1,480
양성평등기금	6,409	56	56	363	56	6,716
통합관리기금	87,523	3,344	8,067	3,944	8,067	83,400
지역개발기금	379,532	260,044	137,610	339,693	137,610	581,615
식품진흥기금	11,988	848	982	848	1,067	11,769

3. 의안전문 : 첨부(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